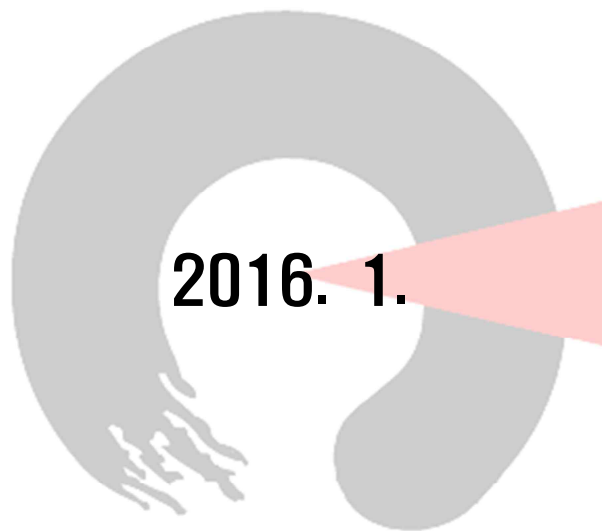


『2016년도 특허청 업무보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 허 청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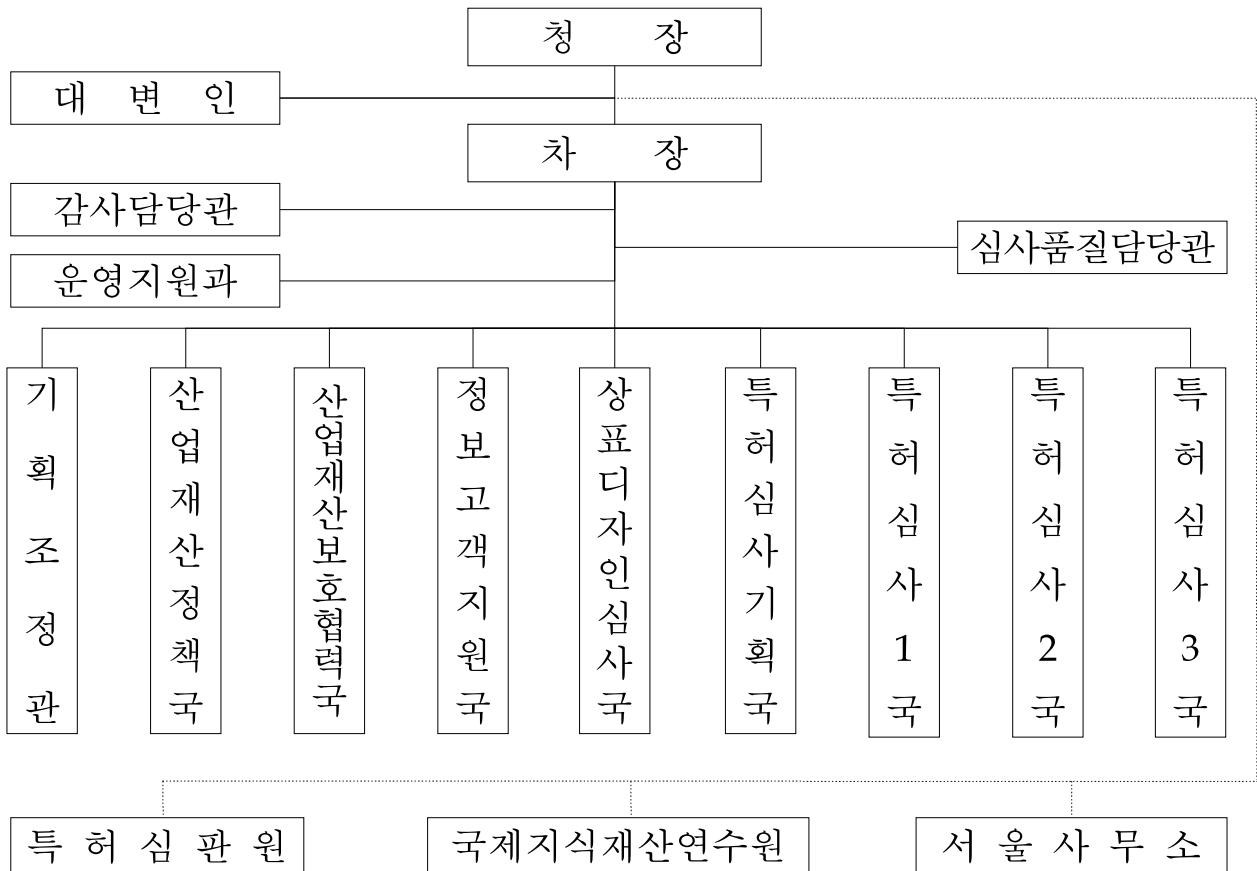
I . 기관 현황	1
1. 조직 및 정원	1
2. 예산	2
II .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	3
III . 2016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5
IV .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8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8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12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17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21
V . 분기별 추진계획	24
〈붙임〉 소관 법률	28

I . 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원

◆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

□ (조 직)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 (정 원) 총 1,600명(본청 1,399명, 소속기관 201명)

(‘15. 12월 기준, 명, 괄호는 현원)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이하	관리운영	계
계	1(1)	23(22)	98(101)	1,083(1,074)	350(343)	45(48)	1,600(1,589)
본 청	1(1)	10(10)	53(53)	996(986)	302(298)	37(39)	1,399(1,387)
특허심판원	-	12(11)	41(44)	75(76)	17(16)	-(-)	145(147)
연 수 원	-	1(1)	3(3)	9(9)	16(15)	4(4)	33(32)
서울사무소	-	-	1(1)	3(3)	15(14)	4(5)	23(23)

* (심사관) 900명(4·5~5급 852명, 6급 48명), 전문임기제 102명 포함 시 1,002명

* (심판관) 95명(4급 40명, 4·5급 55명)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16년도 세입·세출예산은 5,253억원('15년도 대비 0.3% 증가 / 순계기준)

○ (세 입) 수수료 수입 4,587억원, 수수료 외 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665억원

○ (세 출) 지재권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주요사업비 2,633억원(2.5%), 인건비 1,273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432억원(5.2%) 등

< '16년도 예산 현황 >

(백만원, %)

구 분		'15예산(A)	'16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523,534	525,262	1,728	0.3
세 입	o 수수료 수입	441,953	458,720	16,767	3.8
	o 수수료 외 수입	81,581	66,542	△ 15,039	△ 18.4
세 출	o 주요사업비	256,954	263,331	6,377	2.5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76,479	80,620	4,141	5.4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9,352	95,965	△ 3,387	△ 3.4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42,336	47,036	4,700	11.1
	▪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34,417	35,284	867	2.5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4,370	4,426	56	1.3
	o 모태조합 출자*	17,000	-	△ 17,000	순감
	o 기관운영경비	136,186	143,243	7,057	5.2
	o 공무원 연금 등	113,394	118,688	5,294	4.7

* '16년 모태펀드 투자소요는 회수자금(376억원) 활용

II. 2015년도 주요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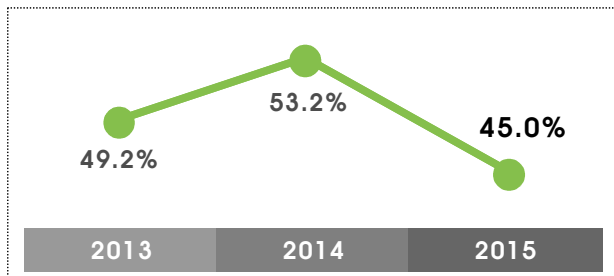
□ (심사·심판) 심사·심판 인력 확충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심사·심판 인력 증원과 비심사 인력을 심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로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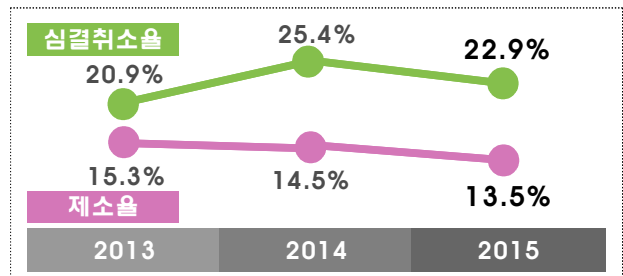
* 심사·심판관 38명 증원 및 비심사부서 인력 33명 심사부서로 재배치

- '특허 심사·심판 제도 개선방안' 시행('15.4)으로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



< 심결취소소송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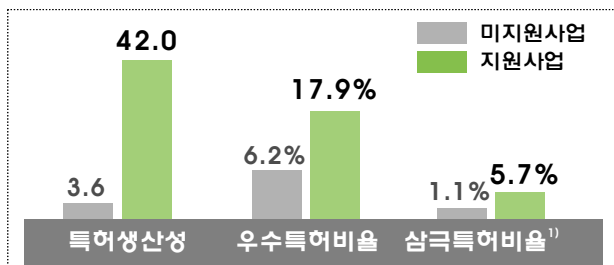
□ (지식재산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를 개설하고, IP 창조 Zone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디어를 손쉽게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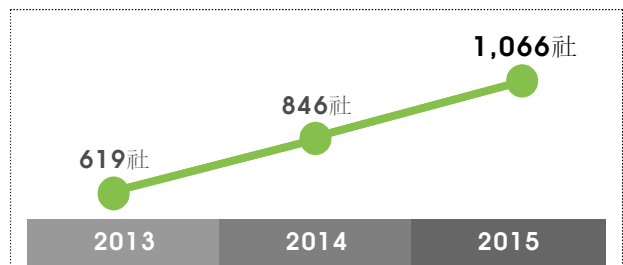
* 설치 지역 : ('14) 4개(강원, 광주, 대구, 부산) → ('15) 6개(인천, 전북 추가)

- 특허-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IP-R&D 전략 지원 성과('10~'14) >



< IP 스타기업 (누적) >



1) 특허생산성 : 투자비용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

우수특허비율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

삼극특허비율 : 국내에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내용의 발명이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동시에 특허출원된 비율

□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의 거래·사업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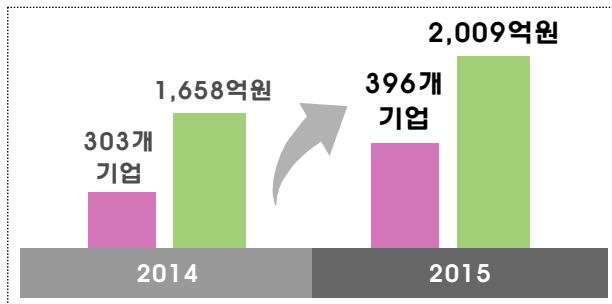
- 지식재산 기반의 투·융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IP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 활성화

* 분야별 펀드 규모(억원) : IP직접투자 150, IP서비스기업 200, IP-R&D기업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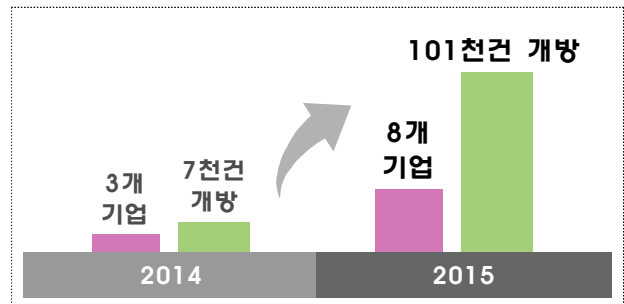
- 대기업이 특허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경우 특허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특허개방 촉진

* (무상 실시) 특허료 50% 감면, (무상 양도) 30만원 상당 포인트 지급

< IP 금융 지원 현황 >



< 특허개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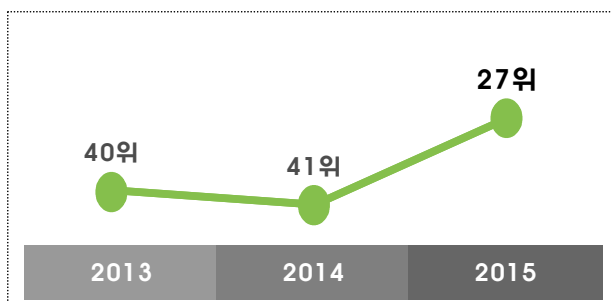
□ (지식재산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 국민안전과 관련한 위조상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신설(일본, '15.6)하는 등 지재권 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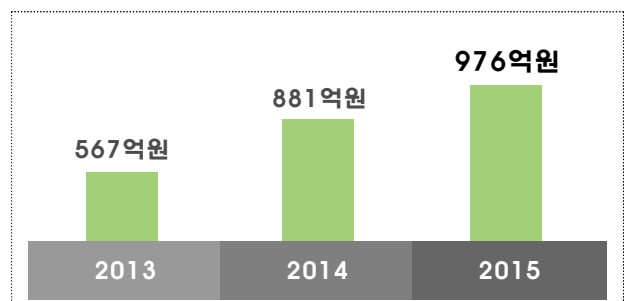
* ('14) 5개국 10개소(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 ('15) 6개국 11개소(일본 추가)

- 특허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소송 관할집중 제도 도입(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 완료, '15.11)

<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15, IMD) >



< 특사경 압수물품 평가액 >



Ⅲ. 2016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2016년도 정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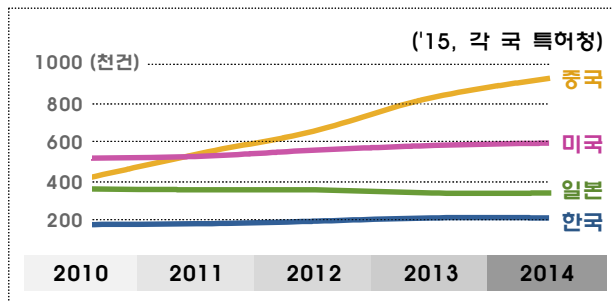
□ (주요국 동향)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은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

-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와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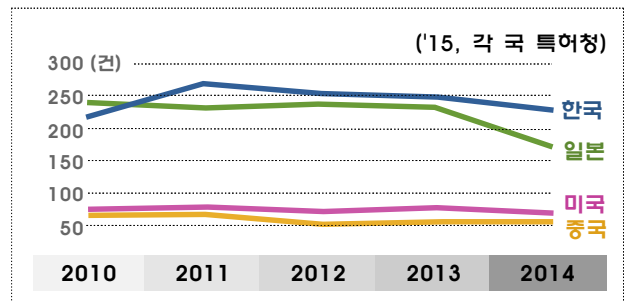
	지식재산 전략계획 ('14 - '18)
	지적재산 정책비전 ('13 - '23)
	지재권 전략 심화계획 ('14 - '20)

-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통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국가 간 심사공조 확대

< 주요국 특허출원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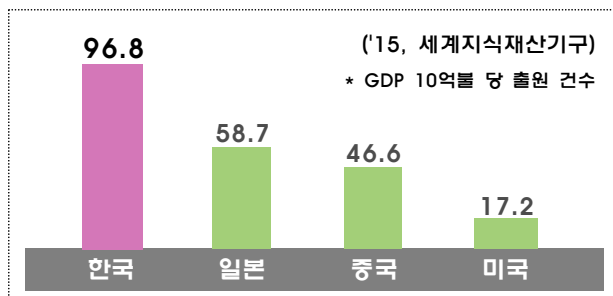
<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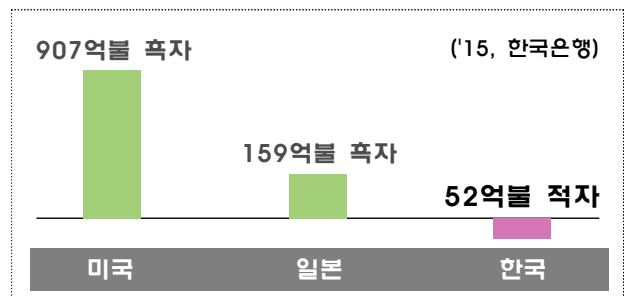
□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의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미흡

- R&D 투자 증가로 창출 역량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원천기술과 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 기록

<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14) >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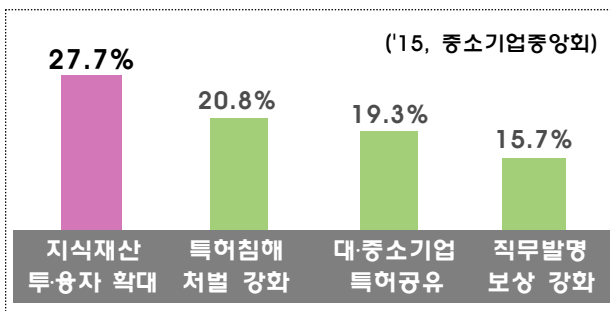
□ **(지식재산 활용)**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저조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활용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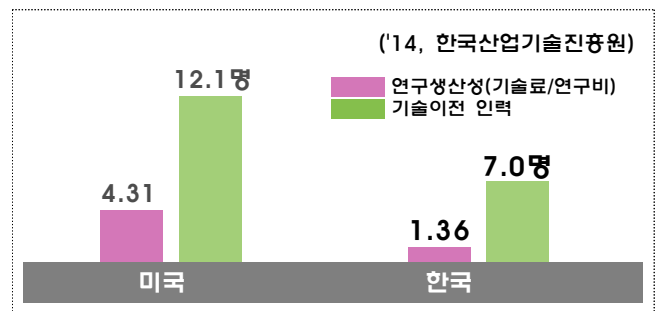
* 미활용 특허 비율(%) : 대기업 19.8, 중소기업 36.9('15, 특허청·무역위원회)

- 대학·공공연은 논문중심의 연구관행과 기술이전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수익 창출 저조

<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 요구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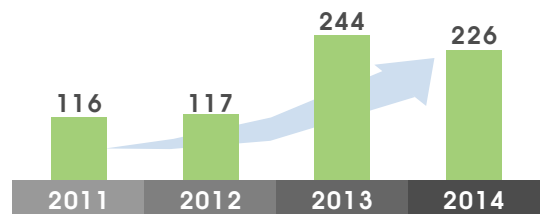
< 대학·공공연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 인력(’13) >



□ **(지식재산 보호)**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고, 국내 위조상품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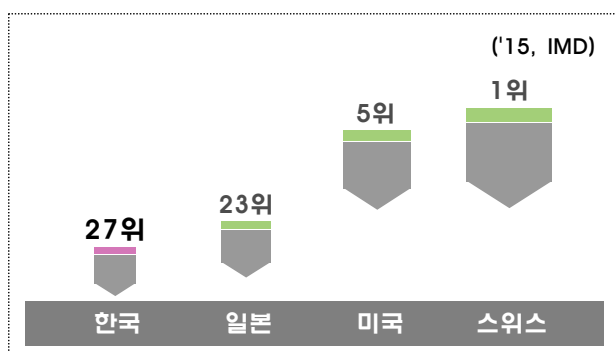
-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는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장애물로 작용

중국·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피침해 신고·상당 현황(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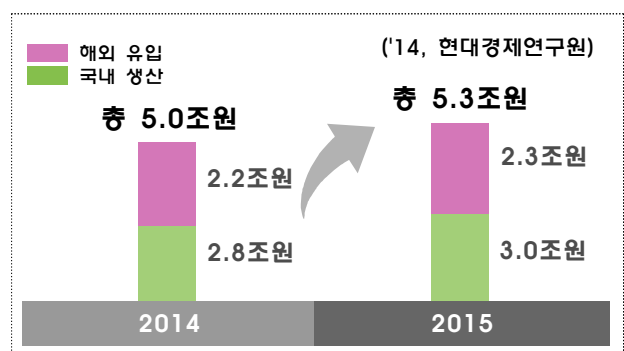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여전히 취약하고, 해외로부터의 위조상품 수입 확대 우려

<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



< 국내 위조상품 시장규모 >



비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목표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 1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 2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쟁송제도 개선
- 3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구축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 1 핵심·표준 특허 창출 지원
- 2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3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3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4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IV.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전략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현 황

- ❖ 심사·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과다로 심사·심판품질 저하 우려
 -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14) : (한) 230, (일) 173, (미) 70, (유럽) 47
- ❖ 법원 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로 인해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이 충분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분쟁의 조기해결 저해
 - * 특허법원에서 무효로 번복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판결 비율('14) : 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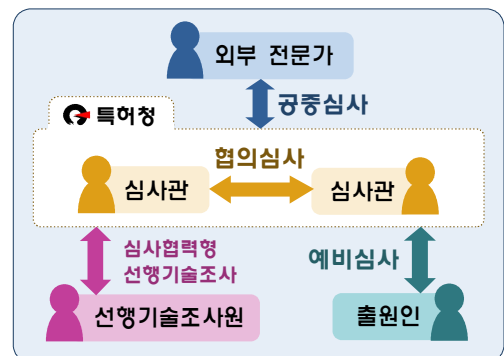
1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 ◆ 심사·심판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원, 외국 특허청 심사관 및 산업현장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

□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심사 서비스 제공

- 산업현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 추진
-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하여 특허고객과의 소통 강화
-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를 달리하는 심사관 간 협의 심사를 확대하여 심사의 정확성 제고

< 현장 소통형 심사협력 체계 >



□ 심사·심판 역량 강화를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심사·심판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여 1인당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건) : ('16) 210 → ('17) 200 → ('18) 190 → ('19) 180

-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심판부 중심 체제로 특허심판부 운영 개선

* (현행) 전문심판부 3개, 복합심판부 4개 → (개선) 전문심판부 6개, 복합심판부 1개

- 기술의 융·복합화, 최신 브랜드·디자인 트렌드 추세에 맞춘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심사·심판관 전문성 제고

□ 심사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한 품질 제고

- 외부 선행기술 조사기관의 참여 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통한 조사품질 제고 추진

- 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특허등록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확대

* 전체 선행기술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 60

□ 주요국 간 심사공조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 공동심사(CSP²⁾)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 제공

* CSP 대상 국가 : ('15) 미국 → ('16) 중국, 일본

- IP5³⁾ 국가 간 PPH⁴⁾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국가 간 심사결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 출원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후 공동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빨리 처리해주는 국가 간 심사협력 프로그램

3) Intellectual Property 5 : 세계에서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5개 특허청

4) Patent Prosecution Highway(특허심사하이웨이) : 제1국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등록결정 등)를 받은 경우, 제2국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 소송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특허분쟁이 신속·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특허쟁송제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심판제도 개선

○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하도록 무효심판제도 개선

* 미국과 일본 등은 심판단계부터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만, 우리나라는 심판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무효심판 당사자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고,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 소송절차에서 정정심판 청구 제한 추진

* 일본·중국 : 심판단계에서만 정정이 허용되고, 법원단계에서는 제한

○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무효심판제도와 2-트랙으로 운영

* 유효성이 의심되는 특허에 대해 특허공고 후 6개월 내에는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그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대응한 심판과 소송절차의 연계성 강화

○ 침해소송과 심판이 동시에 계류된 경우 심판을 3개월 내에 조기에 종결하여 침해소송에서 심판결과가 활용되도록 신속심판 운영

○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전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절차중지신청제도 도입

○ 침해소송에서 제출된 무효항변의 증거자료를 무효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자료 요구제도 마련

◆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식재산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특허·상표·디자인 관련규정 개정 추진

□ 발명의 보호대상 명확화 및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

○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명확히 특허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

* 현재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기록매체(CD 등)로 무단 유통하면 특허침해에 해당되지만, 온라인 유통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명확

○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무권리자의 특허권을 직접 이전 받을 수 있는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 현재는 무권리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가 별도로 특허출원을 해야 함

□ 공정한 상표 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표제도 개선

○ 공정위 등과 협력하여 상표브로커·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상표브로커의 남용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 관리기준 등 정비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심사관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디자인 제도 마련

○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기간 연장(6개월 → 12개월)

○ 디자인의 도면 제출에 관한 형식요건을 완화하고, 화상디자인의 창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구체화

현 황

❖ 해외에서의 특허확보가 저조하고, 우수특허가 부족하여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도 적자

* 해외 특허출원률('10~'12, %) : (독) 54.8, (미) 44.2, (일) 27.9, (한) 17.5, (중) 3.8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억불) : ('12) △47 → ('13) △55 → ('14) △52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하여 IP 창출·활용 미흡

* 전담인력 보유율/지식재산 서비스 이용률('14, %) : 대기업 20.7/61.8, 중소기업 10.1/ 37.3

1 핵심 · 표준 특허 창출 지원

◆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연구개발(IP-R&D),
특허-표준 간 연계 전략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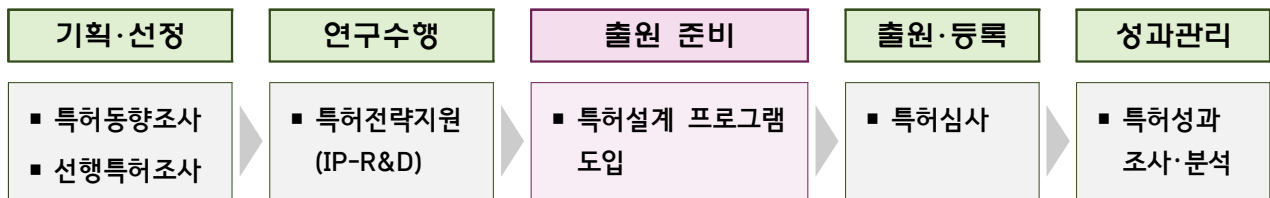
□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 특허 창출

○ 정부 R&D 기획·선정 단계에서 성과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 제고

○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우수기술만을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

* 최적의 특허 권리범위·포트폴리오 설계, 전략적 출원국가 결정 등

<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 단계별 지원 체계 >



○ 응용·개발 분야 위주로 지원해 오던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과급효과가 큰 기초·원천·융합 분야로 확대

* 기초원천연구(기초과학연구원), 의료·제약(보건복지부), 융합연구(과학기술연구회) 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IP-R&D 전략 지원 확대

- 산업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 IP-R&D 전략 지원 확대 및 중점 지원 내용 >

산업 분야	후방산업	전·후방 연계산업	전방산업 (제품·서비스)		
	소재부품	뿌리산업	계약산업	전통지식산업	프랜차이즈, U턴 기업
주요 내용	대일적자 큰 품목 → 대체기술·IP 개발	노하우 공정기술 → 특허권리화 전략	IP포트폴리오 강화 → 에버그리닝 전략	전통지식+현대기술 → IP 융합 전략	특허+디자인+브랜드 → IP 종합 컨설팅

- 소멸특허를 분석하여 개량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 컨설팅 확대

* ('15) 의약품, 3D 프린팅 2개 분야 → ('16)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등 2개 분야 추가

- 기업이 R&D 과정에서 스스로 IP-R&D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에 따른 모듈식 IP-R&D 방법론 개발·보급

□ 표준특허 창출 역량 강화

- 표준 전문가가 국제표준 제정 시 외국기업의 특허전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진행단계별로 특허전략 밀착 지원
- 미래부·산업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하도록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계 구축

<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계 >

연차	1년차	2~4년차	5년차 이후
관련 부처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지원 내용	표준안 개발을 고려한 특허설계 및 보유기술 고도화	미래부, 산업부 국제 표준화 활동 및 표준안 개발 지원 특허청 표준화 활동 및 표준안 개발시 특허전략 지원	후속관리*

* 변경된 표준안에 따라 권리범위 보정 등을 지원하여 표준특허로 최종 구현

◆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공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강화

□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육성

○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에 따라 'IP 인큐베이팅'에서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

* IP 역량단계별(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 'G-IP 닥터(경기)⁵⁾' 등 지역 고유의 IP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컨설팅 실시

□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를 활성화하여 IP 사업화 전략 등을 상담하고, 타 부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IP 창조 Zone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식재산 중심의 창업 지원 강화

* ('15) 인천, 전북(전주) 등 6개 권역 → ('16) 충남(천안), 제주 추가

□ 소공인, 농어촌 향토기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공인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간 협력 강화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교육·상담 내용에 지식재산을 포함하고, 중기청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계획'에 지식재산 분야 지원과제 포함 추진

○ 지식재산 기반의 농수산물식품 분야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지원

5) 기업에 지식재산권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IP 전문가(IP 닥터)가 즉시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기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상시 지원 프로그램

◆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구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촉진

* IP 금융지원 금액(억원) : ('15) 2,009 → ('16) 3,000

□ IP 금융 내실화를 위한 민간 자체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금융기관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IP 가치평가 역량 강화

* ('15) 기업은행, 국민은행 → ('16)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SMART3의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

* IP 가치평가기관(개) : ('14) 10 → ('15) 12(민간 2) → ('16) 16(민간 6)

○ IP 가치평가 모델을 다변화(심층·일반·보급평가)하여 은행, 투자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IP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IP 가치평가·거래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 IP 금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정규 대학 커리큘럼(16주 과정) 보급 및 금융연수원 등을 통한 재직자 교육 병행

□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IP 금융 체계 개편

○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기관에 대한 IP 가치평가 지원 확대

○ 시중은행 등이 IP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 투자펀드 조성

* 매년 100억원 규모의 4~5개 펀드 조성(IP직접투자펀드, 사업화연계펀드 등)

□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 활용 촉진

- 발굴된 유망 특허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타 부처 R&BD 사업과 연계

* 유망 특허기술 발굴(특허청·미래부) → 수요기업 매칭(중기청) → 기업 상용화 R&D 지원(산업부·국토부)의 공동 협업 프로세스 운영

- 시장 니즈에 따라 대학·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제품단위별로 포트폴리오화하여 수요기업에 이전 확대

*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이전 : ('15) 10개 과제 → ('16) 20개 과제

-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분석·평가하여 시장성이 있는 특허만을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유특허의 활용도 제고

□ IP 공급자·수요자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서 통합·제공

* 특허거래전문관(명) : ('15) 9 → ('16) 17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IP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IP 거래 네트워크 구축

* ('15) 의료기기, 전자부품 2개 기술분야 → ('16) 통신 등 2개 기술분야 추가

□ 지식재산 창출·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세제개편 추진

-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대상을 반도체 배치설계까지 확대*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 (현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향후) 반도체 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 추가

현 황

❖ 기술유출이 빈번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 증가(억원) : ('12) 15.7 → ('13) 17.0 → ('14) 24.9

* 상표권 특사경 위조상품 형사 입건(건) : ('12) 302 → ('13) 376 → ('14) 430

❖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은 여전히 미흡

* IP-DESK에 접수된 지재권 피침해 신고·상담 건수(건) : ('12) 138 → ('13) 337 → ('14)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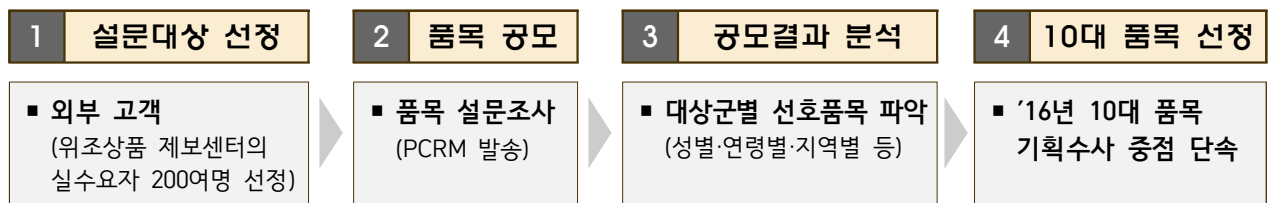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 상표권 특사경의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

□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상표권 특사경 단속 강화

○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기획수사 대상을 국민 공모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획수사 추진

< 기획수사 대상 10대 품목 선정절차 >



○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최신 경찰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수사 환경 개선

* 지역사무소 증설(대구, 광주 2개소) 및 수사인력 증원(10명)

○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거래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모바일 포렌식 장비 등을 활용한 '상습 침해사이트 추적팀' 운영

□ 특허폴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재산 분쟁대응 역량 강화

-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기술분야*에 대해 공동 분쟁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전략 수립 지원

* LED 조명, 반도체 공정장비, 의료기기, 핀테크 보안 분야 등

-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공동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창회와 ID社⁶⁾가 협업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폴 구축

□ 기술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무상 보급

* 벌금 상한액을 증액하고, 침해 이익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계화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허위 표시 관련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행정조치 강화

□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의식 고취

- '17년 지식재산 보호 내용이 초·중등 정규 교과목(실과·기술)에 반영됨에 따라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

- 지식재산 보호 교육 과정을 한국소비자원 교육 프로그램 내에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IP 보호 교육 실시

- 생활광고,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6) Intellectual Discovery : 해외 특허공세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 출연금 형태로 2010년 7월 설립된 특허관리전문회사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분쟁대응 컨설팅과 IP 소송보험 활성화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 IP-DESK·재외공관·현지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시안에 IP-DESK를 추가 개소하는 등 현지 지원 강화
 - * ('15) 6개국 11개소(중국, 일본,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 ('16) 12개소(중국 시안 추가)
- KOTRA 본사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IP-DESK 미설치 지역까지 지재권 분쟁 대응 서비스 지원 확대
-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 상표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 컨설팅 지원 강화
- 중국·아세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 세관 및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초청연수,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설명회 등 확대

□ 우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제고

-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컨설팅 강화
 -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社) : ('15) 348 → ('16) 430
-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참여 보험사를 확대하여 IP 소송보험 활성화
-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IP 보호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분쟁대응 콘텐츠* 제공
 - * 기업 경영진을 위한 뉴스레터, 일일 분쟁속보 등 수요자 맞춤형 분쟁정보

◆ 지식재산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 사회 기여

□ 양자·다자 협상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 선도

- IP5, TM5⁷⁾ 회의를 통하여 특허·상표 분야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새롭게 출범('15.12)한 디자인 분야 ID5⁷⁾ 협력체제 활성화
- TPP, RCEP⁸⁾ 등 양자·다자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분야 통상협상 전략 수립
-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역사무소를 국내에 유치 추진
 - * 현재 일본·중국 등 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9년까지 최대 6개 신설 예정
- 상표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국제상표협회(INTA⁹⁾) 연례회의 서울 개최 추진

□ 특허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 전개

-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 지원을 패키지화하여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효율성 제고
- UAE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대상국과 서비스 분야 확대 추진

* 특허 심사관 파견 및 특허심사 대행 서비스 제공

7) TM5(Trade Mark 5), ID5(Industrial Design 5) :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을 주도(상표 80%, 디자인 95%)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5개 상표·디자인청을 의미

8)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일본 등 12개국),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국·중국·ASEAN 등 16개국)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9)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 190개국 상표 관련 법인·개인, 주요국 특허청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표분야 최대 규모의 민간협회로서, 국내외 입법 과정 참여, 전문가 간 네트워킹 제공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 황

- ❖ **全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부족**
 - * 초·중·고 학생의 발명교육 참여 비율은 전체 학생 중 4%이며,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의 지식재산 강좌 이수 비율은 2.6%에 불과('14)
-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다양화로 맞춤형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증대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 발명·지식재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창의인재와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 확충

-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기업 등의 과학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명교육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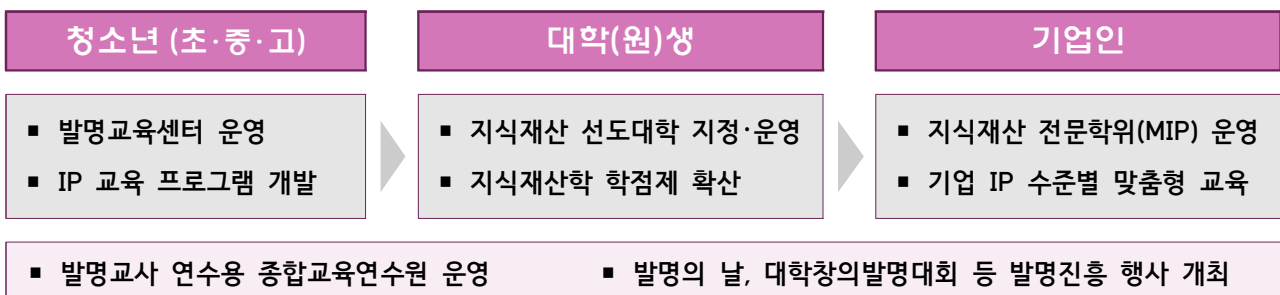
* 현재 1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6년 2개소 추가 설치 및 11개소 현대화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지정·운영

* 중학교 등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 위주로 지역별로 5개 거점센터 지정

- 발명교사의 직무연수를 위한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15.12)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본-심화-전문' 등 단계별 교사연수 실시

<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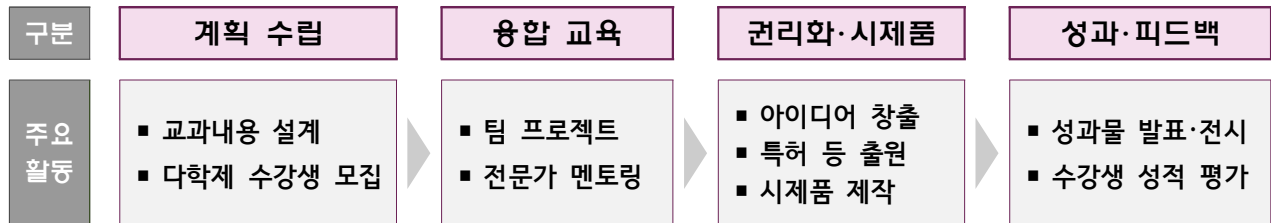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공학·상경·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도입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누적) : ('15) 12 → ('16) 15(대진대, 군산대, 동아대 추가)

< 학제간 융합형 강좌 운영 프로세스 >



- 지역(대전, 강원) 기업과 협력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에 채용 추진

* 멘토링, 현장 실습, 특허분석 경진대회, 채용연계 캠프 등 운영

-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확산하고, 실무중심의 온라인 강좌를 추가 개발

* ('15) 충남대, 동명대, 인제대 3개 대학 → ('16) 전북대 등 5개 대학 추가

- 지식재산 전문학위(석사)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IP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 내 지식재산 전문가 육성

□ 변리사 양성체계 개선을 통한 변리사 전문성 강화

-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문제유형, 난이도 및 실무형 문제 비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변리사, 로스쿨 및 지식재산 분야 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개발하여 '18년부터 본격 적용

- 로스쿨 실무수습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2주 과정)하여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추진

-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와 'IP 실무 클리닉'을 확대 운영하여 예비 법조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 구현

□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 특허 공동심사(CSP) 시스템과 상표심사 오류자동방지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특허넷 시스템 개선
- 선행기술문헌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고도화
- 특허넷 DB의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보안 강화

□ 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 확대
- 중국 특허문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번역사전 DB를 확충하여 중-한 기계번역 서비스 품질 제고



□ 대국민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제고

- 기업의 권리 유지 비용을 적정화하고,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 개편
- 전자출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웹출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전자출원 안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 출원시 서식작성 SW 다운로드 없이 특허로 웹상에서 직접 문서내용을 기입·제출

- 심판고객의 편의를 위해 원격 영상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심판 당사자와의 면담이나 설명회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

V. 분기별 추진계획

1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 현장 소통형 심사를 통한 품질 제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공중심사 처리계획 수립·시행				
■ '16년 특허심사처리계획 수립·시행				
■ 전문심판부 중심 체제로 특허심판부 운영 개선				
■ 선행기술조사기관 등록제 전환 추진				
■ '16년 선행기술조사 사업계획 수립·시행				
■ 한·중 및 한·일 특허 공동심사(CSP) 시행 논의				
■ 특허·상표·디자인제도 국제조화 논의				

2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쟁송제도 개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특허쟁송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 특허쟁송제도 개선안 관련 법원 간담회·공청회 개최				
■ 특허쟁송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3 지식재산권 환경변화에 부응한 제도 구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				
■ 공정한 상표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 창작자 권리 확보 지원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 도면요건 완화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화상디자인 창작성 판단기준 구체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				

1 핵심 · 표준 특허 창출 지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정부 R&D 특허설계 프로그램 운영				
■ 기초·원천·융합 분야 특허전략 지원				
■ 뿌리·제약 산업분야 등에 대한 IP-R&D 전략 지원				
■ 기업역량별 모듈식 IP-R&D 방법론 개발·보급				
■ 표준화 진행단계별 특허전략 밀착 지원				
■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연계체계 구축				

2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 육성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기업 선정·지원				
■ 'G-IP 닥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IP 컨설팅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 운영				
■ '16년 신규 IP 창조 Zone 설치				
■ 소공인 및 농어촌 향토기업 IP 경영 지원				

3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민간 IP 가치평가기관 확대 및 가치평가 모델 다변화				
■ NCS 기반 IP 가치평가·거래 교육과정 개발·보급				
■ 투자 연계 IP 금융상품 개발 및 IP 전문 투자펀드 조성				
■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타 부처 R&BD 사업 연계				
■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분석·평가				
■ 기술분야별 IP 거래 네트워크 구축				
■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1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강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위조상품 합동 단속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풀 구축 시범사업 실시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무상 보급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 생활광고, 캠페인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중국 시안 IP-DESK 개소				
■ KOTRA 본사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신설				
■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사업계획 수립·시행				
■ 외국 지재권 공무원 초청연수 및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 개최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				
■ IP 소송보험 단체상품 개발 지원				

3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IP5 특허청장 회의 참석				
■ WIPO 총회 참석 및 주요국 양자회담 개최				
■ 지식재산권 분야 통상협상 전략 수립				
■ WIPO 지역사무소 유치 제안서 제출				
■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계획 수립·시행				
■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대상 확대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 및 현대화 추진				
■ 체험형 IP 교육을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지정·운영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융합형 강좌 도입				
■ 기업 IP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 로스쿨 지식재산 실무교육 지원				

2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특허 공동심사(CSP) 시스템 구축				
■ 심사관용 검색시스템 고도화				
■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 확대				
■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 개편				
■ 전자출원 시스템 개편 및 안내 매뉴얼 작성·배포				
■ 원격 영상구술심리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				

【 부 록 】 소관 법률

◆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총 8개 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특허법	○ 특허출원·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상표법	○ 상표등록출원·심사, 상표등록요건, 상표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출원·심사,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의 효력, 심판, 소송 등을 규정
발명진흥법	○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의 부정사용 등)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변리사법	○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 시험, 등록, 징계 등을 규정